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138
----------	------

2021년 3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2월 4일 김제리 의원(찬성 11명)
2. 회부일자 : 2021년 2월 9일
3. 상정일자 :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2월 26일 상정· 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 (김제리 의원)

### 1. 제안이유

- 서울시 보훈단체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장의 현안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이를 정책으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하지만 현재 보훈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통로는 연 1회 실시하는 보훈단체 대표자 간담회가 전부인 실정임.
- 이에 서울시 보훈단체의 공식적인 자문기구로 서울시보훈정책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보훈정책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다각도로 청취하여 올바른 보훈정책으로 반영하고자 함.

- 또한 정례적인 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각 단체별 특성 및 설립목적에 고려한 활동 강화를 유도하고 보훈대상자 및 단체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첨부)

###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개정안의 취지

- 동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보훈단체의 올바른 정책 추진을 위해 공식적 자문기구로 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례적 위원회 운영을 통해, 보훈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보훈정책에 반영하고 각 단체별 활동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안되었음.

####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의안번호 2138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 제10조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임.

##### 나. 서울시 보훈단체

- 서울시 보훈단체는 총 11개, 총 136,152명의 회원이 있으며, 각 단체는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명예선양을 목적으로 다양한 보훈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서울시 보훈단체(서울시지부) 현황

(2020.12.31. 기준/ 단위 : 명)

연번	단체명	회원수
1	광복회 서울시지부	2,090
2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	17,728
3	전물군경유족회 서울시지부	12,234
4	전물군경미망인회 서울시지부	10,744
5	무공자수훈자회 서울시지부	16,238
6	고엽제전우회 서울시지부	26,886
7	특수임무유공자회 서울시지부	589
8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	12,825
9	월남전참전자회 서울시지부	36,352
10	4.19혁명공로자회 서울시지부	328
11	(사)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138

- 서울시 보훈단체는 대시민 역사 강좌 등 각 단체의 특성에 따른 50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대표 사업으로는 광복회의 ‘역사 강좌’, 무공수훈자회의 ‘장례지원사업’,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재난 구조교육’ 등이 있음.

<표> 서울시 보훈단체 사업 현황

단체명 (사업수)	사업명
광복회 서울시지부 (6)	3.1절 민족정기선양대회
	광복절 민족정기선양대회
	전적지순례
	바른역사아카데미 교육
	해외독립운동 뿌리 찾기
	호국의지 선양 시민교육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 (5)	자원봉사
	전적지순례
	국군장병 위문
	체육대회
	독도사랑운동사업
전물군경유족회 서울시지부 (2)	자원봉사
	전적지순례

단체명 (사업수)	사업명
전물군경미망인회 서울시지부 (4)	자원봉사 전적지순례 마음치료사업 노령회원 위로행사
무공사수훈자회 서울시지부 (6)	자원봉사 전적지순례 노령회원 위로행사 무공사수훈자 장례지원사업 대전현충원 참배 장진호전투 기념사업
고엽제전우회 서울시지부 (4)	자원봉사 전적지순례 고엽제 관련자 복지증진 코로나19 방역
특수임무유공자회 서울시지부 (5)	특수임무전사자 합동추념식 노령회원 위로행사 전적지순례 한강수중정화 활동 재난구조교육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 (6)	자원봉사 보훈의 집 운영 6.25 바로 알리기 교육 전적지순례 안보결의대회 모범용사 위로
월남전참전자회 서울시지부 (4)	전적지순례 모범회원 위로행사 자원봉사 월남참전 기념식
4.19혁명공로자회 서울시지부 (3)	4.19민주시민교육 홈페이지 4.19 60주년 기념강연회 홍보 교육만화제작
(사)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5)	5.18 서울기념식 행사 5.18 사적지 순례 5.18 서울청소년 문화제 해외교류사업 5.18 학술회의

#### 다. 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

- 현실적인 보훈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보훈단체의 현황을 파

악하고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함. 하지만 현재 이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통로는 ‘서울시 보훈단체 대표자 간담회’가 전부인 실정임. 본 간담회는 ‘18년부터 연 1회 보훈단체장을 대상으로 보훈단체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보훈단체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음.

#### ■ 서울시 보훈단체 대표자 간담회

- 시기 : ‘20년 6월중(호국보훈의 달 기념)
- 참석 : 서울시장, 보훈단체 대표자 및 임원진 등 30여명
- 내용 : 보훈단체 건의사항 청취, 보훈단체 임원 격려 등

- 올바른 보훈정책 제고 및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공식적인 의견 기구로써 ‘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례적 위원회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보훈단체의 운영을 도모해야함. 특히 다양한 분야의 보훈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다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하여 광범위한 보훈정책이 논의 될 필요성이 있음.
- 서울시는 『제1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12년)』 시행으로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제도 및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였음. 또한 보훈대상자의 고령화 등에 따른 경제·의료적 수요 증대, 유공자의 명예와 삶의 질을 제고하는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제2기 서울특별시 보훈종합계획(’18년)』을 수립하고, 국가유공자의 편안하고 품위 있는 삶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보훈대상자 및 단체 욕구 파악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계획을 모색하기 위해 2021년 서울시복지재단 연구과제로 『제3기 서울특

별시 『보훈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은 보훈회관 건립 방안 도출, 보훈단체별 공익사업 평가 및 발굴, 보훈수당 개편 및 보훈단체 예우강화 등에 관한 사항임.

- 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를 통해 보훈종합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자문을 수행하여, 보훈단체별 특성 및 설립목적 고려한 특화사업 발굴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는 보훈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라. 세부 조례내용 검토 : ‘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보훈정책 자문회의를 개최해야 함.
- 기존에 보훈정책의 의견 수렴 차원으로 보훈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연 1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에 무리는 없다고 판단됨.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은 보훈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현장전문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두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 ① 시장은 서울시 보훈정책을 자문

<p>제10조 (생략)</p>	<p><u>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보훈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u></p> <p><u>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u></p> <p><u>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호의 사람들 중에서 위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보훈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li> <li><u>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u></li> <li><u>3. 보훈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u></li> <li><u>4.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u></li> <li><u>5. 이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li> </ol> <p><u>④ 이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p>
------------------	--

**마. 조례 개정안 관련 집행부 의견 : 원안동의**

-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서울시 보훈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자문위원회 운영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여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 본 개정안은 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보훈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으로써 쟁점사항은 없으며, 시장의 조직편성권에 해당하는 위원회 설치·구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반대의견이 없는 바, 위원회 설치·구성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
- 서울시는 『제1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12년)』을 수립하여 보훈정책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제2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18년)』를 통해 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강화된 정책을 추진하였음. 올해 제1,2기 보훈종합계획 성과평가를 통한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제3기 서울특별시 보훈종합계획』수립을 앞두고 있음. 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보훈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됨.
- 보훈정책 분야의 전문위원을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공식적인 위원회 개최를 통해 보훈정책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실시한다면, 보다 질 높은 보훈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김제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38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2월 04일  
발 의 자 : 김제리 의원(1명)  
찬 성 자 : 고병국, 김달호, 김창원,  
김화숙, 이병도, 이호대,  
임종국, 장상기, 정재웅,  
한기영, 황인구 의원(11  
명)

## 1. 제안이유

- 서울시 보훈단체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장의 현안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이를 정책으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하지만 현재 보훈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통로는 연 1회 실시하는 보훈단체 대표자 간담회가 전부인 실정임.
- 이에 서울시 보훈단체의 공식적인 자문기구로 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보훈정책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다각도로 청취하여 올바른 보훈정책으로 반영하고자 함.
- 또한 정례적인 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각 단체별 특성 및 설립목적에 고려한 활동 강화를 유도하고 보훈대상자 및 단체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 ① 시장은 서울시 보훈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보훈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호의 사람들 중에서 위촉한다.

1. 보훈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 보훈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이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이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10조(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u></p> <p><u>① 시장은 서울시 보훈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보훈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u></p> <p><u>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u></p> <p><u>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호의 사람들 중에서 위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보훈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li> <li><u>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u></li> <li><u>3. 보훈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u></li> <li><u>4.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u></li> <li><u>5. 이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li> </ol> <p><u>④ 이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제10조 (생략)</u></p>	<p><u>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u></p>

문서번호	2021011900000006
------	------------------

## 미참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보건복지위원회	담당 : 조도형 과장 여차민 팀장 채소영 주무관
접수일 : 2021.01.19	
회신일 : 2021.01.25	내용문의 : 02-2180-7942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참부 사유서

####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참부 근거 규정
3. 미참부 사유
4. 작성자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 (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의 신설에 따라 위원회 운영 비용 발생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42,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42,000천원으로 연평균 8,4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 위원은 총10명(이중 수당지급 대상은 9명)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연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연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 운영 비용(제10조)	8,400	8,400	8,400	8,400	8,400	42,000
	소계(b)	8,400	8,400	8,400	8,400	8,400	42,000
총비용(b-a)		8,400	8,400	8,400	8,400	8,400	42,000

- 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 운영 비용 ≙ 42,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 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 운영비용)<sub>i</sub>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연간 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 운영 비용

= (참석수당×수당지급 참석인원×개최건수)+(업무추진경비×참석인원×개최건수)

= (200,000원×9명×4회)+(30,000원×10명×4회)

= 8,400천원



- ※ 참석수당 단가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에 따라 기본료 15만원을 준용하고, 위원회가 2시간을 초과하여 진행된다고 가정하여 초과비용 5만원을 포함
- ※ 업무추진경비 단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에 따라 3만원 수준으로 적용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채소영

☎ 02-2180-7942  
e-mail : liz1998@seoul.go.kr